##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26

발의연월일: 2020. 8. 21.

발 의 자:김도읍·정진석·박덕흠

이채익・조수진・권명호

김용판 · 정동만 · 김태흠

정점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·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수 준과 이용편의에 관련한 것이어서,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,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 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및 제7조, 제8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설치·이용 및 위생적 관리"를 "설치·이용,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"으로, "위생상의 편의"를 "편의"로 한다.

제4조 중 "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"을 "편익 증진,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"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④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내부 칸막이 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청결"을 "청결 및 범죄발생 예방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관리"를 "청결과 범죄발생 예방에 필요한 관리"로 한다. 제12조 중 "연 1회의"를 "분기별로"로 한다.

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제16조 후단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공중화장실등의 내부 칸막이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

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

내부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중화장실	제1조(목적)
등의 <u>설</u> 치·이용 및 위생적 관	<u>설</u> 치·이용, 위생적 관리 및
<u>리</u>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	<u>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</u>
써 국민의 <u>위생상의 편의</u> 와 복	<u>편</u> 의
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	
한다.	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
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	책무)
국민의 <u>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</u>	<u>편익 증진, 위생수준</u>
<u>향상</u> 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	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
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	
등의 설치·지정 및 관리에 필	
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	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	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
	하는 자는 범죄발생을 예방하
	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
	실등의 내부 칸막이를 설치하
	<u>여야 한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
<u>⑤</u> 제1항부터 <u>제4항</u> 까지에서	<u>⑥</u> <u>제5항</u>
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	
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	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	
다.	
세8조(공중화장실의 관리) ① (생	제8조(공중화장실의 관리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	②
화장실과 그 주변의 <u>청결</u> 을 위	<u>청결 및 범</u>
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	<u> 죄발생 예방</u>
준수하여야 한다.	
③ 공중화장실의 <u>관리</u> 에 관한	③ <u>청결과 범죄</u>
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발생 예방에 필요한 관리
제12조(시설 점검) 시장·군수·구	제12조(시설 점검)
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	
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	
라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를 확	
인하기 위하여 <u>연 1회의</u> 정기	<u>분기별로</u>
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	
을 하여야 한다.	
데15조(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	제15조(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
원회)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	원회) ①
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	
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·	

군수·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

하기 위하여 시·군·구에 공중화 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6조(보조금의 지급) 국가 및
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
을 설치·관리 또는 개선하는
자에 대하여 설치·관리 또는
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
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 이
경우 제7조제1항부터 <u>제3항</u>까
지,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
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
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
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
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
는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
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(보조금의 지급)
<u>제4항</u>